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 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 주소: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90010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문 이혼은 안 끝나고, 재혼은 준비되었는데

〈문〉 저는 2년전에 아내와 헤어져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법적 이혼은 1년전에 이미 신청하였으나 재산 분배문제를 놓고 서로 주장이 달라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새사람을 만나 아이들한테도 떳떳하게 정식으로 새출발을 하고 싶은데 재산 관계로 이혼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을 모두 처리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최종 판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종결되는 절차를 밟아 최종 이혼 판결문을 받게되나, 때로는 부부 중에 한쪽이 이미 재혼할 의사가 있으나, 이혼에 따른 모든 문제의 종합적인 최종 판결이 시기적으로 요원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막연히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처리되어 최종 판결문이 들어가기 기다리는 대신에 미결된 문제들은 계속 시간을 갖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시키되 법적인 부부관계를 종결시키는 판결문만 따로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판결문을 Status Only Bifurcated Judgment라 부릅니다.

〈답〉 귀하의 경우에는 Status Only Bifurcated Judgment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이 주관하는 이혼이란 단순히 법적 부부관계를 종결시키는 것 이외에, 자녀 양육권, 자녀 방문권, 자녀 양육비, 배우자 생계 보조비, 재산 및 부채 분배, 가정 폭력이 개입된 경우 접근 금지 등

문 이혼 수속중 재 결합했는데 법적 권리와 의무는

〈문〉 2년전 재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합의하에 제가 이혼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아내에게 배우자 생계비 보조비를 매달 내라는 임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아내의 재외로 화해를 해서 아내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제 수입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는데 재결합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같이 재결합한 기간동안 배우자 생활비 보조비를 주지 않았으며 그 금액을 전부 소급해서 내라는 청구서를 아내로부터 받았습니. 이러한 아내의 권리 주장이 타당할니까.

에 의하면 이러한 배우자 생계 보조비 임시명령은 이혼이 완결되기 이전에 당사자들이 부부로서 다시 화해하고 재결합하여 같이 사는 기간에는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단 실제로 화해 여부에 대하여 서로의 주장이 상반될 경우는 판사가 당시의 상황을 따져보아 화해 여부를 결정 짓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내가 재결합하여 합쳐볼 것을 제의하였다는 점, 아내가 귀하의 거주지에 다시 이주하였다는 점, 두 사람이 같이 사는 동안 귀하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는 점, 또 부부로서 성적 관계를 가졌으리라는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서 행세하고 또 그렇게 여겨졌으리라는 가능성을 감안할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이혼이 법적으로 완결되기 이전에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그 기간동안에 한하여 법원이 내린 배우자 생계 보조비 지불에 대한 임시 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답〉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이 귀하에게 아내의 생계 보조비를 다달이 내라는 명령은 이혼의 최종 판결문이 재판이나 또는 합의를 통해 확정되기 이전의 임시명령(Temporary Spousal Support Order)으로 사려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 제 3602조

문 양육비 적게 내려고 수입 줄였는데 어떻게 대응하나

〈문〉 저는 최근에 이혼 신청을 하고 두 살 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직장인으로 고정적인 월급을 받아오던 중, 제가 이혼을 신청한 이후에,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저에게 자녀 양육비를 안내거나 내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을 내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보지 않으면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 두겠다고 협박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 저는 자녀 양육비로 한 푼도 못받게 됩니까.

려는 예는 가정법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를 방지 혹은 지양하기 위하여 법원은 자녀 양육비 책정 시, 부모의 실제 수입뿐만 아니라 부모의 수입 능력(Earning Capacity) 자체를 고려할 수 있으며 실제의 수입대신 수입 능력에 근거한 가상적인 숫자를 실제의 수입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 아니라고 봅니다. 이혼의 경우, 자녀 양육비의 책정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문을 얻기 위하여 이혼이 완결될 때까지 자신의 수입을 줄이

귀하의 경우, 남편의 과거 수입이 늘 일정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 신청과 더불어 직장을 그만둘 경우, 법원에 남편의 현재 수입보다는 그의 수입 능력에 기준 하여 자녀 양육비가 책정될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